〈춘향전〉과 조선후기의 지방사회 읽기

심재우*

1. 역사연구 자료와 문학작품
2. <춘향전>의 가치와 내용의 현실성
3. <춘향전>이 그려낸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실상
4. 나머지 말

1. 역사연구 자료와 문학작품

역사 서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료이다. 최근 조선시대사 연구의 주제와 문제의식이 확장되면서 일기, 고문서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가 새삼 귀중한 사료로 부각되곤 하는데 문학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개척하고 있는 서울여대 정연식 교수가 유배가사를 활용하여 조선 선비들의 유배생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복원하였다거나,[1] 서울대 오수창 교수가 야담, 소설을 분석하여 당대인들의 신분관념이나 작품에 그려진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실상을 조명한 것[2] 등이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료(史料)의 영역을 문학작품에까지 확대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법률 및 사회제도의 변동 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 또한 이 방면의 연구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송사소설(訟事小說) 작품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1) 정연식, 「조선시대의 유배생활-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9,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 오수창,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의식」,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2009.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조선시대에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백성들이 국가가 제공한 소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사 연구자에 의해 최근에 제기된 '중국소송사회론(中國訴訟社會論)'을 주목할 때 중국 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왕조 사회의 법문화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3]

구체적으로 소송사회론은 중국 명청시대 백성들이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적극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관들이 매우 과중한 소송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소송사회론을 조선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는 사료의 부족을 실감한다. 사실 현재 남아있는 사료라는 것이 대부분 관찬 기록이며, 백성들이 실제 작성한 소송 관련 문서나 고문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배층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록으로는 당대 법률문화를 폭넓게 재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송사소설을 통해서 원님재판의 실상과 더불어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법과 사회에 대한 당대 백성들의 인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춘향전> 연구는 그 동안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춘향전> 속 지방사회의 모습이 갖는 현실성 여부를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평가한 시도는 그리 많았다고 볼 수 없다.[4]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고전문학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춘향전>의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본다. 특히 내용이 갖는 높은 리얼리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춘향전>은 송사소설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남원부사 변학도의 춘향에 대한 심문, 하옥 조치 등 지방관의 재판 운영 양상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일본 교토대학교 후마 스스무(夫馬進) 교수가 주장하는 중국소송사회론과 조선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심재우,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동양사학연구』 123, 동양사학회, 2013.

4) 역사학자의 연구로는 정연식, 오수창의 글이 대표적이다. 정연식, 「춘향전-가공의 현실에 투영된 꿈」,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오수창,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2012.

www.kci.go.kr

2. <춘향전>의 가치와 내용의 현실성

<춘향전>은 많은 이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줄기를 이룬다. 여느 문학작품들처럼 둘의 사랑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막아선 이가 다름 아닌 남원부사 변학도였다. 당시에는 고을 수령이 국가에서 지방에 파견한 유일한 관리였다. 자연히 수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고을민의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 그런 변학도의 횡포로 억울하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춘향을 어사 이몽룡이 구해주면서 <춘향전>의 결말은 헤피 엔딩으로 귀결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먼저 자주 언급되어 왔듯이 <춘향전>이 다른 고전소설에 비해 역사사료로서 가치가 큰 매력적인 텍스트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춘향전>의 줄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는 점 때문이다.[5] <춘향전>의 줄거리 속에는 오랜 시간 함께 사랑을 받아 온 다른 판소리계 소설 <홍부전>처럼 박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 황당한 설정도 없으며, <심청전>처럼 물어 빠져 죽어야할 심청이 느닷없이 환생하지도 않는다. <춘향전> 또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가공의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전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의 부조리한 지방사회의 현실을 매우 그럴 듯하게 그려내고 있다.

덧붙여서 관찬 기록에 실려 있지 않는 지방사회 수령통치의 실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조선후기 지방사 기록은 고문서, 수령의 보고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비롯한 민정지침서, 암행어사 서계(書啓)·별단(別單) 등 여러 자료에서 산견되지만, 미시적인 지점까지 소상하게 이들 기록을 통해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춘향전>의 주요 무대가 되는 조선후기 남원부의 동헌(東軒), 감옥의 풍경은 다른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

5) 이에 대해서는 정연식, 위 논문(2004), 285면 참조. 한편 법학자 장경학도 <춘향전>이 대중성을 확보한 이유를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정신이 작품 속에 약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장경학, 『신 법률춘향전』, 법률출판사, 1997, 334면).

물론 <춘향전>의 내용 중에는 당대의 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곧바로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남원 고을로 돌아온다거나, 어사 이도령이 출도(出道)한 후 변학도를 직권으로 봉고파직(封庫罷職)시키는 장면 등은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가능한 설정이다. 조선시대 관직 제도상 과거 급제 후 일정 기간의 관료생활을 역임해야만 암행어사에 임명될 수 있었고, 암행어사가 고을 창고를 봉하여 수령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는 있어도 어사 단독으로 수령을 파직시킬 권한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몇몇 장면 외에는 <춘향전>의 여러 묘사가 탈법(脫法)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조선후기의 지방사회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믿는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춘향전>의 현실 묘사가 당시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와 현실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춘향전>에서 묘사하는 여러 장면들을 분석할 때 당시 법제도와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현실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춘향전>이 그려낸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실상

3.1. 변학도가 춘향의 수청을 요구하는 장면

이하에서는 <춘향전>의 내용 가운데 당시 현실에 비추어 개연성이 크거나 지방사회의 법집행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따져보기로 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먼저 변학도가 춘향의 수청(守廳)을 강요하는 장면이다. 춘향의 신분 문제, 기생이 고을 사또의 수청을 드는 것의 적실성 문제는 <춘향전>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이 당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설정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만화본, 경판본 등에서 보듯 춘향이 남원의 관기(官妓)였다고 상정한다면

www.kci.go.kr

관기가 고을수령의 수청을 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비록 고을 수령이 관기를 취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이었지만, 여러 기록에서 유사한 죄목으로 수령이 탄핵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일이 드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년 전 1833년(순조 33)에 충청도에 파견된 암행어사 황협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충청도 덕산현 한 모녀(母女)의 비극적인 강물 투신자살 사건을 본 적이 있다.[6]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덕산현의 전 현감 한용용(韓用鏞)이란 자가 외읍(外邑)에서 조금 곱상한 아낙네만 보면 거짓으로 음탕한 짓을 했다고 얽어매어 관비(官婢)로 삼곤 했는데, 자신의 관아에 미색이 있는 여성들을 붙잡아 두고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하루는 임신한 경내 한 여인의 미모에 반해 역시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관비로 삼고자 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여성이 끝내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하자 어머니와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고, 이들을 구하려던 관차(官差)도 함께 익사했다. 그녀의 뱃속 아기까지 포함하여 무려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적인 덕산현 사건은 암행어사 황협의 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것이다. 어사 보고서라는 점에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수령에 의해 양인 처자가 관비, 혹은 기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조선 초기 태종 때에는 전라도 나주판관 최직지(崔直之)가 고을에 방문한 만경현령 윤강(尹江)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명화(名花)라는 관기에게 매질을 가하여 3일 만에 죽게 한 사건도 적발된 적이 있다.[7] 이상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춘향전>에 나오는 수령의 관내 기생에 대한 수청 강요는 상상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는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였지만 말이다.[8]

---

6) 심재우, 「19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지방통치와 사회문제 연구-1833년 암행어사 황협의 『수행기사(繡行紀事)』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55~156면.

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6월 25일(경신). 신병주・노대환 지음, 『고전 소설 속 역사기행』, 돌베개, 2002, 175면.

8) 정연식은 조선후기 수령이 고을 관기와 관계를 맺는 일이 비교적 흔한 일이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수령과 관기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내놓고 자행해도 무방한 일은 아니었

3.2. 법집행과 감옥살이의 실상

다음으로 지방관아에서의 형장(刑杖) 집행 장면, 옥살이에 대한 <춘향전>의 묘사는 어떤 관찬 기록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완판본 <춘향전>에서 변학도는 동헌에 앉아 춘향에게 형장을 가한 후 목에 칼[枷]을 채워 하옥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칼은 남자 죄수에게만 채우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춘향이 옥(獄)에서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은 당시 규정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춘향전>의 설정은 어색하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교정례(受敎定例)』에 실린 1747년(영조 23) 영조의 수교를 보면 당시 여자들에게도 불법적으로 칼을 채우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즉 영조는 평안도 관찰사의 장계(狀啓)를 읽다가 심양(瀋陽)에서 온 삼례(三禮)와 소업(小業)이라는 여성에게 칼을 채워 엄히 수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여자에게는 항쇄(項鎖)만 채우고 칼을 채우지 못하게 한 당시의 규정을 지방에서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파악한 영조는 각도에 재차 수교(受敎)를 내려 감옥에 수감된 여성에게 칼을 채우는 위법행위가 없도록 지시하고 있다.[9] 이 수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을 수령이 불법적으로 여자 죄수들에게 칼을 채우는 일이 흔히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을 괴롭히던 변학도에게 규정 따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터이니, <춘향전>에서 춘향이 칼 찬 장면은 당시 흔한 불법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춘향을 동틀에 앉혀놓고 두 다리를 묶어놓은 후 매로 다리를 고문하는 장면은 특히 흥미롭다. 조선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죄수를 고문할 때 장딴지 부위를 신장(訊杖)으로 때리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점차 장딴지 대신 동틀에 묶어서 정강이를 때리는 방식으로 진화해갔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고문할 때 장딴지 대신 정강이 부위를 때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언제, 왜 변화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하멜표류기』에 피의자를

다고 지적하였다(정연식, 앞 논문, 2004, 293~295면). 필자도 정연식의 주장에 동의한다.

9) 『수교정례』의 「女人勿枷」 기사 참조.

www.kci.go.kr

작은 의자에 앉혀 발등 위와 무릎 사이를 각각 줄로 묶고 그 사이를 때렸다는 하멜의 목격담이 실려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미 17세기에 고문 관행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10] 결국 <춘향전>의 이 부분 설정은 법전 등 당시 관찬기록으로는 찾기 어려운 조선후기 고문 방식의 변화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적어도 이 대목은 문학작품이 관찬 기록의 빈틈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실례이다.

덧붙여 변학도가 춘향을 30대만 때리고 옥에 수감한 장면 또한 당시 규정상 신장(訊杖)으로 하루에 때릴 수 있는 상한치가 30대인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당시 지방에서 고문할 때 쓰는 신장으로 한번에 30대 이상 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사흘이 지나서야 다시 칠 수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무도한 변학도가 적어도 신장 집행 횟수만은 제대로 준수한 셈이다.

이처럼 <춘향전>은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법 집행의 실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 <춘향전> 장면 하나하나에는 때론 관아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관행을, 때론 당시의 법규와 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3.3. 지방관의 남형과 사형 집행 문제

마지막으로 변학도가 춘향을 사형에 처하려 한 장면의 현실성 여부이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종종 지방고을 수령이 죄인을 심문하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수령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벌권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의 다섯 가지 가운데 태형(笞刑)에 불과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수는 관찰사를 거쳐 조정에 보고되어 국왕의 최종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변학도가 자신의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을 '능욕관장(凌辱官長)', 즉 수령인 자신을 능욕했다는 죄목으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형에 처하려 한 설정은 당시의 법규를 고려할 때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당시 규정만 놓고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부세 문제 등으로 관(官)-민(民) 갈등이 증폭되어

10)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 :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2011, 39~40면.

www.kci.go.kr

있던 18~19세기 지방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관련 기록을 보면 지방관이 형장을 남용하다가 고을민을 죽게 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다. 그 가운데 단연 최악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정조 때 경상도 창원부사 이여절(李汝節)의 폭거이다.[11] 정조 말기 이여절은 창원부사에 부임한 이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곤장 등으로 마구 매질하여 무려 경내 백성 30여 명을 죽였다가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많은 고을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여절 사건은 분명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지방관이 관찰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혹형(酷刑)·남형(濫刑)을 가하는 일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었다.

한편, 앞의 불법적인 형장 남용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또한 순조 때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으면서 경내의 강도 살인범 김대득(金大得)이란 자를 정식재판을 거쳐 조정에 보고하는 대신 곤장으로 때려 죽였음을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밝히고 있다.[12] 이는 다산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관찰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즉, 강도 살인범을 조정에 보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 황해도 관찰사가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장으로 물고(物故)를 내는 편법을 동원한 것인데, 다산이 『흠흠신서』에 관련 기록을 자연스럽게 남기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이와 같은 일이 종종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찌 됐든 당시 고을 수령이 관내 백성에게 불법적, 혹은 관례적으로 형장을 가해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다시 <춘향전>으로 돌아가서 변학도가 실존인물이라는 가정 하에 춘향을 고문하여 죽이고는 공무 수행 중 물고가 난 것으로 처리한다 해도 아주 어색한 설정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11) 이여절 사건에 대해서는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225면 참조.

12) 『欽欽新書』, 剪跋蕪詞, 「谷山府强人金大得跟捕查決狀」

www.kci.go.kr

4. 나머지 말

지금까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춘향전>의 자료적 가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필자는 앞서 <춘향전>에서 특히 주목해보아야 할 장면으로 세 가지를 꼽아보았는데, 당시의 법제도나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장면은 높은 사실성과 극적인 재미가 잘 결합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춘향전>의 몇 장면만을 제시하였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춘향전>의 작가가 전편에 걸쳐 당대 현실을 현장감 있게 형상화했음은 분명하다.

요컨대 필자는 <춘향전>이 조선후기 실제 지방사회에서 일어났을 법한 내용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훌륭한 역사서 사물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것도 바로 위와 같은 리얼리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학문 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문학과 역사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조선시대사 연구에서 문학과 역사학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강조되어 온 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작업이 늘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이 두 학문의 학제적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춘향전>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텍스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후기 역사상 이해의 심화를 위해 <춘향전>을 이용한 향후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

www.kci.go.kr

www.kci.go.kr